

# 안산신도시2단계건설에따른보상촉구건의안

의안 번호	769
----------	-----

발의년월일 : 1999. 5. 10.  
 발의자 : 임 흥 무 의 원  
 외 4인

## 1. 주 문

- 안산시신도시2단계 건설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 규칙을 종합하여 이주대책 기준일 현재(92. 3. 11) 동 사업지구내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소유건물을 철거하고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게 되는 자에 한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 시행하고 있으나
- 사업지구내 주택을 소유하고 동일 사업 지구내에 거주하였다 할지라도 당해 소유가옥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 시킴은 현 실정을 감안할 때 부당한 처사로서 해당 이주민들의 집 단반발은 물론 사업지연 및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개발사업이 지역 주민의 이익과 권리 보장이 선행되어야 하는 차원에서 이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사업지구내 잔류되어 있는 이주민에 대한 조속한 보상으로 이들이 조기에 이주될 수 있도록 특단에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함.

## 2. 제 안 이 유

- 건설교통부 고시 1992-71호 ('92. 3. 11)로 안산신도시2단계 건설 사업이 실시 계획 승인 고시됨에 따라 안산시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 공사와 용지 보상업무 위탁 협약 ('92. 7. 8)을 체결하여 사업지구내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공특별법 시행규칙에 “건물을 소유하고 당해 건물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자”를 이주대책 대상자로 규정한 것을 근거로 하여 이주대책 기준일 현재 ('92. 3. 11) 동 사업지구내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사업지구내 타인 소유 가옥에 거주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자등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바,
- 당해가옥 미거주자로 공공사업 시행을 위하여 소유 건물을 제공하였고 동 사업 시행으로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게 되어 공특별법상의 생활근거 상실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해당 이주민들은 사업구역내 1가옥을 소유 하였으나, 동일 구역내 타인 소유 가옥에 거주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주민들로 사업시행자가 공특별법 시행 규칙의 “당해 건물에 계속 거주한 자”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불합리한 처사이므로, 형평성 및 이주민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해당 관련 이주민들을 조속히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
- 또한 안산시의회에서는 지난 '95. 9. 25일 고잔들 이주대책 보상 및 개발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개발사업이 지역 주민의 이익과 권리가 보장 될수 있도록 주민요구 사항이 원만히 협의되어 차질없이 고잔들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촉구 건의한 바 있음.
- 따라서 안산신도시2단계 건설 사업이 지역 주민의 이익과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특별법 시행규칙의 신축적 해석 등을 통하여 해당 관련 이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 마련과 아울러 동 시행규칙 개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조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이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함.

## 안산신도시2단계건설에따른보상촉구건의안

- 안산시 고잔들 2단계 건설사업과 관련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이 지역 주민의 이익과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특별법 시행 규칙의 신축적 해석등을 통하여 해당 관련 이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수용될 수 있는 특단의 조치 마련과 아울러 현재 잔류되어 있는 이주민에 대한 조속한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 이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함.
1. 건설교통부 고시로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 사업이 실시 계획 승인 고시됨에 따라 안산시가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용지 보상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지구내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2.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와 안산시가 사업고시 이주민 실태조사서의 기록을 문제삼아 이주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76. 12. 4일자로 반월 신도시가 고시된 이후 현재까지 23년이란 긴 세월을 반월 신공업 도시개발 구역으로 묶여 아무런 권리 행사도 하지 못하는등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오직 이주대책만을 기대하고 생계를 유지해 왔음을 감안할 때 이는 현실을 무시한 행정편의 위주의 행위로서
  3.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 사업이 지역 주민의 이익과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특별법 시행규칙의 신축적 해석등을 통한 해당 관련 이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 마련으로 조속한 시일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이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함.